



경상남도학원안전공제회 주요 약관

1.보험가입자의자격취득	보통보험가입자의 자격은 법인의 보험료납부동지에 의거 보험료를 납부하고 공제보험증서를 교부 받음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2.보험가입자의자격상실	보험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1. 폐원 2. 설립운영자 변경(지위승계)
3.보험가입자의자격상사	공제회는 공제보험을 가입하고자하는 학원 및 독서실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사(신규설립 또는 지위승계 포함)의 청약이 있는 경우 사무처에서 청약자의 보험가입 자격을 심사 후, 보험계약을 승낙합니다.
4.공제보험계약의성립	① 공제보험계약은 공제보험계약자(보험가입자)의 청약과 경남학원안전공제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공제회의 사전 승낙없이 청약자가 임의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하 "경남학원안전공제회"는 "공제회", "공제보험계약자"는 "계약자", "공제보험계약"은 "계약"이라 합니다.) ② 공제회는 계약의 청약과 받고 공제보험료 전액을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제회가 청약을 승낙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보험증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청약자의 보험가입자격을 심사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5.보험가입거절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공제보험가입을 거절합니다. 1.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경우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부가 수감수수를 허위로 조정한 때 3. 보험가입자가 수감수 관리에 소홀히 한때 4. 보험가입자가 청약자격 제한 또는 제명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5. 사무처 업무를 방해한 때 6. 공제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7. 보험청약자의 구내시설이 교육활동 중 사고의 지역적인 범위로 파악하기 불분명한 경우
6.약관설명의의무	① 공제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공제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회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7.계약의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보험료는 승계, 폐원을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수익자(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학원(교습사)의 주요한 변경사항을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인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고의 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8.보험료산출	보험료는 계약자로부터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접수한 후 산출하며 보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보험료 : 학원당 년 15,000원 - 수감생부가보험료 : 수감생 1인당 년 1,800원 단, 학원의 경우 수감생의 상한은 400명, 하한은 30명으로 하며 교습소는 25명을 기준으로 균일하게 합니다.
9.보험기간	보험기간은 보험료납부일 24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10.보험료납부	보험료는 보험개시일 24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속가입자는 기존계약 만료일 24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1.보험료산정	보험가입자가 학원·교습소를 폐원 또는 승계(설립자변경)한 경우, 보험계약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잔여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폐원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폐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계(설립자변경)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설립자변경승인공문을 첨부하여 법인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12.보상하는손해	수감생 및 학원종사자가 학원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 및 재산(화재)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드립니다. 1. "학원교육활동"이란 학원 교육과정에서 의한 학원수업을 말합니다. 2. "재산"이란 화재의 사고를 말합니다. 3. 미인정하는 비급여 진료비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4. 보상금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13.보상한도	① 수감생 - 1사고당 10억원 이내(단, 교습소는 5억원 이내) - 1명당 1억5천만원 이내 - 1명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내 ② 학원종사자 학원종사자의 보상은 의료실비로 제한하며 보상금액은 3백만원 이내 ③ 화재피해(인적사고 보상불가) - 사고당 2천만원 이내(단, 교습소는 1천만원 이내), 연 1회 한정
14.위임규정	법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5.보상범위	1. 인적사고 손해 - 보상대상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사, 강사, 수강생 (강사는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자로서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중인 자라고 합니다.) 2. 재산손해(재난으로 인한 인적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학원의 구내시설에 수용 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집기, 비품
16.교육활동등의지역적인범위	1. 구내시설은 단독건물 및 복합건물의 건물내부시설로서 교육지원청에 등록 된 시설을 말합니다. 단, 학원이 위치한 층 이하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시설 내로 봅니다. 2. 학원 외 학습활동은 교과와 관련된 교육으로 전 수강생에게 공지되고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관리·감독하에 특별교육행사에 참가한 수강생에 한하여 인정하며, 교육행사에 정해진 지역적인 범위 내로 한다. 3. 실습·실습실기를 필요로 하는 직업기술학원으로 구내시설 외에 별도의 실습실 및 파견실습은 보상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7.보상하지아니하는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살, 자해, 고의적인 폭행 등의 경우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태풍, 홍수) 사태로 발생한 경우 4. 등·하원 중 학원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 5. 본인의 지병이나 원인이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사망의 경우 6. 학원종사자, 수강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화재로 일어난 재산의 피해 7. 재난사고 시 도난 및 분실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 8. 가해자가 있거나 보상주체가 있는 경우 9. 학원 외 학습활동을 위한 이용차량에 의한 인적사고 10. 그 외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반드시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18.요급여	법인은 피보상대상자가 12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는 보상한도 내의 의료실비 중 건강보험 수가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치료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폐급질여	1. 법인은 피보상대상자가 12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기능이 상실 되었을 때에는 장애 정도에 따라 법인이 정한 후유장애등급표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상대상자가 피해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를 하여야 할 상태가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 후유장애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20.사망보상금	피보상대상자가 12의 상해를 입고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하였을 때 치료비, 장례비를 포함한 유족보상금. 단, 치료기간은 180일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21.재산손해	학원의 구내시설에서 발생한 전기·화재에 따른 직접손해로서 학원의 구내 시설에 수용 된 교육과정에 필요한 집기, 비품의 피해보상에 한정하며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구내시설이라 함은 단독건물 및 복합건물의 건물내부시설로서 교육지원청에 등록 된 시설을 말한다. 행정자치부령 '화재조사 및 보고요령'을 준용하여 산정한 피해액을 화재피해의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아래의 물건은 보상의 대상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귀금속, 귀중품, 보석, 보석, 그림, 골동품, 조각물,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자동차, 중기, 광택기, 컴퓨터 시스템 기록,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편, 동물, 식물, 농작물, 교육과정과 관련 없는 집기 비품, 교육과정에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전자기기, 교습기구(도구) 등
22.알릴의무	1. 보험가입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고내용을 반드시 법인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보험가입자는 설립자변경, 정원변경 등 법인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7일 이내 법인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3.권리상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권리가 상실됩니다. 1. 법인에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상위 할 때 2.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24.재심청구	법인의 보상결정에 불복할 경우 보상금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법인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5.보상금청구권상실	이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권이 상실됩니다. 1. 보상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보상대상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사고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 3.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 4. 고지의 의무(알릴의무)를 해태한 경우 5. 폐원, 설립자변경으로 인해 보험료를 반환받은 경우 6. 부가수감수수를 조정하여 실수감생수가 조정수감생수보다 초과된 경우 7. 학원설립·운영등록증서 또는 교습소설립·신고증명서에 등록 된 정원 또는 일시수용인원이 초과 된 경우 8.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26.청구권소멸시효	1. 보상금 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2. 보험료반환 청구권은 보험료반환 청구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27.구상	고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구상을 청구합니다.
28.대위	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 한도 내에서 보험가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획득합니다.
29.법원판결	보험가입자가 법인의 보상금 지급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30.분쟁의조정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법인과 보험가입자, 보상지급대상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의 분쟁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 미인정하는 비급여 진료비 기준표(보상지급규정 제7조 관련)

- ① 상급병실료 : 진료받은 병원의 일반실 기준 병실료와의 차액분
- ② 주사료 : 성장호르몬, 인대강화주사, 통증완화주사, 부종완화주사, 연골주사, 영양제, 비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무통주사료, 재생주사, 유착방지제, 콜라겐(리젠콜, 콜파인 등), 예방접종 등
- ③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극저온치료(CRYO), 고주파 열치료 등
- ④ 레이저(재생레이저 등) 및 박피술, 흉터제거(관리), 미백(화이트닝 케어)치료, 반흔수술 등
- ⑤ 검사료 : 간염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체열검사, 혈청 아밀로이드 검사, 감염검사, 면역검사, 코로나 검사, 독감검사 등
- ⑥ 재료대 : 방수캐스트, 목발·슈즈·팔걸이 1회 초과분, 연고 200,000원 초과, 창상피복재 200,000원 초과, 히트워머, 동종진피, 증식치료(DBM 등), 연조직 재건 등
- ⑦ 보장구(보조기)
  - 가. 팔, 다리, 척추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기
    - 팔보조기 : 100,000원 초과
    - 다리보조기 : 250,000원 초과
    - 척추보조기 : 200,000원 초과
  - 나. 기존 착용하던 안경(콘택즈렌즈 포함) 또는 치아교정기 파손에 따른 구입비
  - 다. 외국산 보조기는 국산 보조기와의 차액지급을 제외하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가능
- ⑧ 영상진단료(MRI, CT, 초음파) : 1회 초과분, 부상부위 이외 촬영비
  - 가. 비급여 MRI 촬영비 : 1회(50% 지급)
  - 나. 비급여 CT 촬영비 : 1회(50% 지급)
  - 다. 비급여 초음파 촬영비 : 1회(100% 지급)
- ⑨ 식대 : 환자 1식 초과분, 보호자 식대
- ⑩ 영수차액 : 할인액, 미납액, 중복청구액
- ⑪ 제증명료 : 1부 초과시, 일반보험사 제출한 증명료 발급비
- ⑫ 처치 및 수술료 : 가덱스, 마취흡입제, 1회용 수술포
- ⑬ 응급이송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응급증상인 경우」의거 지급하며 차액은 비인정
- ⑭ 치아보철료
  - 가. 3치 이하 : 1치 당 30만원 초과
  - 나. 4치 이상 : 1치 당 20만원 초과
  - 다. 임시치아 : 1치 당 15만원 초과
  - 라. 심미적 교정비는 미지급단, 15세 미만 어린이의 치아보철료는 의사소견서 제출시 치아보철료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 ⑮ 기타 : 사물함관리비, 수저구입비, CD구입비, 간이영수증, 카드전표, 환자복 등 소모품비, 과잉진료비 한약재약값(예. 보약), 국외치료비, 선택진료료, 치료 목적 이외의 성형수술비, 대변기, 소변기, 체온계, 후두마스크, 압박스타킹, 암보드, 스킨커버, 인공장기, 인공관절, 가공뼈, 조직이식 재료, 화장품, 보호·예방·방지용 소모품, 간병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 ⑯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나 보험료체납 등 보험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 수혜율을 제외하고 지급